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1084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와 C(D생)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5. 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1. 9. 9. 접수 제40205호로 마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C은 1996.경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C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 2) C이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지체하자, 원고는 1998. 6. 2. E은행에 17,540,567원을 지급하였고, 1999. 10. 2. C과 연대보증인인 F로부터 1,105,878원을 변제받았다.
- 3) 원고는 2013.경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47889호로 C과 F를 상대로 “32,218,040원 및 그 중 16,434,689원에 대한 2003.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13. 9. 17. 확정되었다.
- 4) 2021. 11. 16. 현재 원고의 C 및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액수는 원금 16,434,689원과 지연손해금 62,456,071원의 합계 78,890,760원이다.

나. 피고와 C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3. 5.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H, I, C, 피고가 각 1/4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3. 5.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9. 주문 제2항과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1) C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C은 2022. 5.경 창원지방법원 2022하단477, 2022하면47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이전에 원고가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는 자신이 30년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가 취득한 C의 상속지분 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대 122.4㎡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시멘트 벽돌조 및 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5.39㎡

2층 46.72㎡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2.58㎡

- 위 1,2 부동산 중 1/4지분 끝 -

